

융합교육지원센터운영지침(부서전결)

시행 : 2013. 12. 1.

제1조(명칭 및 관할 업무)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융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,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육사업추진단 산하 부설기구로 두어 양 캠퍼스의 융합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센터는 창의적 융합교육의 실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, 소통과 공유를 통해 융합교육의 공감대와 저변을 확대하고, 궁극적으로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본교의 창학이념 달성을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 본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장
2. 객원교수
3. 직원
4. 연구원 및 조교

제4조(자격 및 임면)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육사업추진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객원교수는 센터장이 제청하고, 교육사업추진단장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이 임면한다.

③ 직원은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④ 연구원 및 조교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직무 및 임기) ①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객원교수는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융합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, 연구조사를 담당한다.

③ 직원은 본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연구원은 융합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실무를 처리하며,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조교는 본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보조하며,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발령한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융합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과 지원 방침 등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본 센터 객원교수 및 융합교육 관련 부서 또는 학과(부)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교육사업추진단장이 임명하고, 제2항의 관련 부서의 범위는 센터장이 교육사업추진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간사는 본 센터의 객원교수로 한다.

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
결한다.

제8조(보칙)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사업추진단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지침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